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23 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이성권 · 김기웅 · 이종배

김소희 · 김상훈 · 조은희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, 유치원의 유아, 초·중·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.

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 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.

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4호 중 "장애인"을 "장애인 및 그 보호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(소방교육・훈련) ① (생	제17조(소방교육・훈련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	4		
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			
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			
<u>장애인</u>	<u>장애인 및 그 보호자</u>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